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비 및
가축입식비 등의 지원비율 명시〉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9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비 및 가축입식비 등의 지원비율 (70% 이상) 명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비 및 가축입식비 등의 지원비율 (70% 이상) 명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비용,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70퍼센트 이상을 보조·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 ⑪ (생략)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제2항제5호·제6호·제8호의2에 따라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⑥ ~ ⑫ (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함에 있어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도 포함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며, 보험목적물 여부나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유실되거나 파손된 시설비 및 철거비, 유실되거나 폐사한 가축에 갈음한 어린 가축의 구입비, 가축의 폐기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보조비율을 70%로 규정하려는 것임.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로 축산시설이 유실·파손되거나 가축이 폐사하면 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재개를 위해 복구비 지원을 강화할 경우 피해 농가의 생활안정과 농업생산기반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을 보임.

특히 개정안은 보조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상황이나 행정 재량에 따른 지원 편차를 축소하여 재해보장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의무적인 지원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농어가와와 형평성 측면의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 농약대금·대파대금, 가축·치어 등의 구입비 등 피해 유형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의 최저지원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 축산농가에만 적용되는 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가 피해 규모나 복구비 부담 정도가 아닌 농어업의 유형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축재해보험은 농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재해로 인한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로, 2025년 말 기준 가입률이 96.4%에 이르는 등 축산농가의 재해위험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가축재해보험 보상 내용]

☐ (대상) 가축(16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보장내용)

○ (가축)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등

* 자기부담금(소 10~40%, 돼지 5~20%, 가금 10~40% 등)을 제외하고 보상

○ (축사) 화재 및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로 인한 손해

* (가입대상) 건물의 부속물·부착물·부속설비·기계장치

구분	보장하는 손해
소	○ (주계약)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법정전염병 제외 ○ (주계약) 긴급도축,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특약) 소도체결함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 결함으로 인한 손해
돼지	○ (주계약)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폐사 ○ (특약) 폭염 :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폐사 ○ (특약) 전기적장치 :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인한 손해 ○ (특약) 질병위험 : 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로타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폐사 ○ (특약) 축산휴지 : 보상하는 손해로 축산업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손해
가금	○ (주계약)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폐사 ○ (특약) 폭염 :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폐사 ○ (특약) 전기적장치 :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인한 손해
말	○ (주계약)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법정전염병 제외 ○ (주계약) 긴급도축, 불임(암컷) ○ (특약) 운송위험 : 운송 중 발생한 사고(주계약 보장재해) ○ (특약) 경주마부적격 : 건염, 인대염, 골절, 경주중 실명으로 경주마 부적격 판정 시
기타 가축	○ (주계약)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폐사 ○ (특약)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사슴·양) * 법정전염병 제외 ○ (특약) 꿀벌이 낭충봉아부패병·부점병으로 폐사한 경우
축사	○ (주계약)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손해
	○ (특약) 돈사·가금사에 대해 설해로 인한 손해 보상 제외
풍막	구내폭발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화재대물 축사 내 화재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 (보험금 산출)

○ (가축) 보험금 = 손해액(단가 × 체중 × 폐사 마리수) × (1 - 자기부담비율)

◇ (예시) 자기부담금 20%형에 가입한 농가에서 한우 암컷 28개월, 1마리 폐사한 경우

320만원의 보험금 수령 → 10,000(원)* × 400kg** × 1마리 × (1-20%)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예시)

** 소 발육표준표상 28월령 체중

○ (축사) 보험금(현재가액) = 신축가액 - 감가공제액

* 감가공제액 = 신축가액 × 감가율(=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 (경년감가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시설물 같은 내구재의 가치가 줄어드는 비율을 뜻하며 이를 연단위 비율로 나타낸 값

그런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할 경우,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을 높일 경우 농가가 스스로 재해위험에 대비할 유인이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나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의무지원비율 설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비는 재해의 발생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소요액의 변동성이 큰데,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경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

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한편, 농식품부는 피해액의 70% 이상을 복구비로 보조할 경우 보험 가입한 농가보다 더 많거나 유사한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 과도한 재정 수반과 함께 가축 재해보험 가입 동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5